

2026년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목적

- FTA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여건 개선 필요
- 친환경 과실생산으로 과수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보급 및 지원 필요

2. 추진방향

- 과수 전업농, 선도농업인 지원으로 과원 경영의 규모화 도모
- 친환경·GAP인증 농업인 지원으로 친환경 재배기반 확대

3.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예천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565,000천원
- 사업내용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무인전동방제기, 승용예초기 또는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과수 재배 농업인
- 사업단가
 -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무인전동방제기 : 20,000천원/대
 - 보조비율 : 50%, 보조금 상한액 10,000천원
 - －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또는 승용예초기 : 9,000천원/대
 - 보조비율 : 50%, 보조금 상한액 4,500천원
- 사업 기준 기준
 - － 과수전용방제기(승용SS기) : 500ℓ 이상 겸용(승용) 방제기

- 전동무인방제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무인 이동이 가능한 방제기
- 농용고소작업차(다목적리프트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수직상승형, 뽕형무한궤도식
- 승용예초기 : 농업기계목록집의 승용, 원격조종형

5. 사업추진요령

가. 사업추진절차

군	: 사업 시행지침 통보 및 사업자 선정 (단, 예산대비 신청물량이 과다할 경우 군 물량 배정 후 읍면자체선정) : 사업 추진 지도 및 점검 : 보조금 지급 및 사업비 정산
읍면	: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수요조사 결과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후 통보 및 사업추진 점검 : 사업 완료 보고 및 증빙 서류 제출 : 사업 마무리 점검 및 사후 관리
농업인	: 사업신청, 사업추진, 정산서 제출

대상자 선정보고, 정산보고 ↑ ↓ 사업계획시달, 자금교부

사업신청 ↑ ↓ 사업확정,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으로 새로운 통장 개설(해당사업 이외의 자금 입·출금 불가, 통장부제에 해당사업 명기)

나. 업체선정

- 업체 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업인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관내 소재 사후봉사업체간의 사후봉사이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사후봉사이행을 위한 협약서 징구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농업기계목록집” 책자에 등재된 농업기계 공급자(사후관리업소) 명단 참조

다. 사업 추진단계

- 특별한 사유없이 상반기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의지가 약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취소 통보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6개월 이상 추진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과수 관련 국도비 사업 지원 제한
- 사업 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완료 후 전체 사업비 총액을 금융거래를 통해 입금 후 보조금 신청(사업비가 지원 단가 초과할 경우 자부담 추가)

※ 1사업 1통장 원칙

※ 계좌 거래 원칙(농업인 통장에서 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현금 및 대체 거래 불가

라. 사후관리단계

- 읍·면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
- 지원대상자(생산자 단체)별 관리대장을 비치·활용하고, 완료된 시설·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
- 사후관리기간 이내 목적 외 사용, 임의처분, 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보조금으로 취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시설설치 완료시	10년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	장비구입시	5년간	

- 보조금의 부당사용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지원 제한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보조금부정수급 종합대책』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보조사업 지원 불가 및 민형사상 책임, 행정벌 부과
 -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해당기간 동안 사업자금 지원 불가
 - 사업이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한 경우(천재지변 등 기상재해의 경우는 제외) 향후 1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여 사업이 확정된 대상자는 보조금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지원 불가
- 개별사업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지침 준용
 - 2026년 과수,채소,특작분야 국·도비사업 시행지침

【서식 1】

2026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조직명)				생년월일			
	조직일경우 참가농가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재 배 기 반	재배면적	ha(다축형 ha, 초밀식형 ha, 일반과원 ha)						
	친 환 경 재배면적	ha	인증구분			인증번호		
	수출실적	톤(2024 : 톤, 2023 : 톤)						
신 청 내 용	신청기종	계	동력 제초기	농용 고소작업차	주행형 동력분무기	보행SS기	승용SS기	전동 무인방제기
	수 량(대)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6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1. . 신청인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2. 친환경·GAP 인증관련 서류 : 친환경·GAP 인증농가에 한함 3. 과실수출 실적 : 최근 2년간 실적(수출실적이 있는 농업인 또는 단지) 4. 공동이용협약서 : 공동이용일 경우 5.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2. 사업소재지
3. 보조금 신청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6. 사업수행기간
7. 기 타

위와 같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단체명(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2. 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예천군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 제40조) >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예천군수 귀하

보조사업 완료 실적 보고서

- 1. 보조사업명 :
- 2. 소요사업비 :
- 3. 사업개요
 - 사업취지 및 목적
 - 사업기간 :
 - 사업소재지 :

4. 추진실적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5. 입금계좌번호 :

붙 임 : 사업비집행 세부내역 1부.

예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을 위와 같이 수행하였기에 완료 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1. 사 업 명 :
2. 사업소재지 :
3. 보조사업자 :
4. 사업비집행 세부명세

[illegible]

보 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보조금 집행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 첨부 : 자재구입 및 각종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보조금을 위와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4. 사업완료 확인내역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금 (%)	자부담 (%)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예천군수 귀하

사 진 대 지

농 가 명
(대표자)

사업장 위치

『전중후 및 기계 기대번호, 전체 구입 및 배부사진 등』

【붙임 1】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업명 : 20○○년도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 대상공급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_____ (이하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_____ (이하 “을”)은 과수생력화장비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_____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
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
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관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
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 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 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km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〇〇. .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